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공사명: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그린 스마트스쿨) 리모델링 공사

2026. 05. 31

■ 공 사 개 요

1. 공사명 :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공사

2.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3. 용역시행방침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4.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5.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현지여건변동에 따른 폐기물처리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 증감이 있는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 계약이후 과업대상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로 과다, 과소를 상계한 물량이 적정 용역비를 초과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지체로 과업대상 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기타사항

◦ 본 용역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 본 용역 시행 중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 및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 후 처리한다.

■ 시 방 서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2.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우리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